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인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139

발의연월일: 2022. 11. 7.

발 의 자:권인숙·강득구·강훈식

기동민 · 김정호 · 김철민

서동용 • 안민석 • 안호영

오영환 · 유정주 · 이동주

이원욱 • 정춘숙 • 한정애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토킹행위의 범위 확 대, 피해자보호명령제도,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시 가중처벌 등 을 도입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, 그 밖에 직장동료 등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, 상대방의 정보 훼손 등의 행위 및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상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해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

(안 제2조제1호).

- 나.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정의하고,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으로 함(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의2 신설).
- 다.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, 법원은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·귀가 시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 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(안 제17조의3 신설).
- 라.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, 기간 연장이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(안 제17조의4 신설).
- 마.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보호명 령을 할 수 있고, 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함(안 제17조의5 신설).
- 바.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, 스토킹행위자 등은 항고할수 있음(안 제17조의7 신설).
- 사.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,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 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18조제2항 및 제20조).

법률 제 호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가족에"를 "가족, 그 밖에 직장동료 등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"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"정보통신망"을 "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바.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·가공·편집·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
- 사.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·보관 또는 전송되는 상대방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·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
- 아. 상대방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상해를 가하거나 생 명을 해하는 행위
- 5. "피해자보호명령사건"이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.

제18조 앞의 "제3장 벌칙"을 "제4장 벌칙"으로 한다.

제3장(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 피해자보호명령

- 제17조의2(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)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·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 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.
 -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.
- 제17조의3(피해자보호명령)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.
 - 1. 피해자의 주거,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
 - 2. 피해자에 대한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 용한 접근금지
 -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.
 -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④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.
 -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

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1.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 · 귀가 시 동행
- 2.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
- 3.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
- 4.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-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, 기간, 절차,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의4(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) ①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 및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17조의5(임시보호명령) ① 판사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

-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.
-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7조의 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피해자보호명령"은 "임시보호명령"으로 본다.
- 제17조의6(이행실태의 조사)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,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,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.
 -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 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.
- 제17조의7(항고와 재항고) ①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(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)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, 제17조의5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,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

수 있다.

-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
-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,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7조의8(위임규정)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·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"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 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 죄를 저지른 사람
- 2.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사람 제20조의 제목 중 "잠정조치의"를 "잠정조치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부분) 중 "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.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
 - 2.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5에 따른 임시보

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스토킹행위"란 상대방의 의	1
사에 반(反)하여 정당한 이유	
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	
인, <u>가족에</u> 대하여 다음 각	<u>가족, 그 밖에 직장</u>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동료 등 상대방과 밀접한 관
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	<u>계에 있는 사람에</u>
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	
는 것을 말한다.	
가.·나. (생 략)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우편·전화·팩스 또는	다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	
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	
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	
<u>정보통신망</u> 을 이용하여 물	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
건이나 글・말・부호・음	<u>신망"이라 한다)</u>
향・그림・영상・화상(이	
하 "물건등"이라 한다)을	
도달하게 하는 행위	
라.•마. (생 략)	라.•마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바.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
	개인정보를 수집・가공・

<신 설>

<신 설>

2. ~ 4. (생 략) <신 설>

<u><신 설></u> <신 설> 편집·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

사.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·보관 또는 전송되는 상대방의 정보를 훼손하 거나 상대방의 비밀을 침 해·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

아. 상대방이 반려의 목적으로로 기르는 동물에 상해를가하거나 생명을 해하는행위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"피해자보호명령사건"이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제17조 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 다.

제3장 피해자보호명령

제17조의2(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)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 위지·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 다. <u><신 설></u>

-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.
- 제17조의3(피해자보호명령)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.
 - 1. 피해자의 주거,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
 - 2. 피해자에 대한 「전기통신사 업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 신을 이용한 접근금지
 -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 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.
 -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 경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④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3 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 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

할 수 있다.

-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.
-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원
 에 출석・귀가 시 동행
- 2.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 시설 등으로 인도
- 3.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 <u>적</u> 순찰
- 4.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-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, 기간, 절차, 그 밖

<신 설>

<신 설>

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의4(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의 ①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및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7조의5(임시보호명령) ① 판사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수 있다.

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

<신 설>

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 한할 수 있다.

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 17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한다. 이 경우 "피해자보호명 령"은 "임시보호명령"으로 본 다.

제17조의6(이행실태의 조사)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,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수시로 조사하게 하고,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수 있다.

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 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제17조의7(항고와 재항고) ① 제1

<신 설>

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(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)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, 제1 7조의5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,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.

-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 항을 준용한다.
-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,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7조의8(위임규정) 피해자보호 명령사건의 조사·심리에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.

<신 설>

제3장 벌칙

제18조(스토킹범죄) ① (생 략)

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해당하는-----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(생략)

제20조(잠정조치의 불이행죄) 제9 제20조(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) 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 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 | 해당하는-----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 설>

<신 설>

제4장 벌칙

제18조(스토킹범죄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

- 1.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
- 2.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 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사 람
- ③ (현행과 같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- 1.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한 사람
- 2.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 호명령 또는 제17조의5에 따 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

이행하지 아니한 사람